

별첨5

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

□ **필기시험**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	비고	
지체장애	상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-	기존 1~3급	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-	기존 4~6급	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-	기존 1~6급	
뇌병변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-	기존 1~3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-	기존 4~6급	
시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1~2급	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기존 3급 2호	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	기존 3급 1, 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확대문제지 제공,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.7배 연장 축소문제지 제공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-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,5급 1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확대문제지 제공,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.5배 연장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-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5급 2호, 6급
		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확대문제지 제공,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5급 2호, 6급
	청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2~6급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장애유형과 등급을 확인

□ 면접전형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
지체장애	상지	전담도우미 지원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.5배 연장
	하지	전담도우미 지원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뇌병변장애		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.5배 연장
시각장애		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.5배 연장
청각장애		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
※ 발표 준비시간 1.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(종합병원 이상)